

● 제33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830)

2025. 06. 1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2830

I. 조례안 개요

1. 제출경위

가. 제 출 자 : 시장

나. 제출일자 : 2025년 05월 26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05월 29일

2. 제안이유

-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건강 분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시정 전반에 건강 관점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건강총괄관’ 위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과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간 연계를 위한 조항을 신설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연계 관련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3항)
-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수당,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 ~ 제3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24. ~ 4. 30.)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김서연 (☎02-2133-7512)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본 개정안은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음.
- 또한, 건강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자격요건, 업무, 수당, 해촉 등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별 검토

가.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간 연계 관련 규정 신설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는 시장이 수립해야 하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현행조례 제5조제1항)’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해야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¹⁾’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기 위함이라 밝힘.

현행	개정안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 (현행과 같음)

1) 「지역보건법」 제7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제5장 보칙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본다. 제5장 서울건강총괄관의 운영
--	---

- 그런데 개정안 제5조제3항을 통해 신설하려는 위 주요내용은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 간의 ‘연계’를 위한 내용이 아니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임.
- ‘제안이유’에 맞게 두 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면 아래와 같은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

<입법례: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다른 계획 연계 조문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단체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민간전문가인 ‘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근거와 자격요건, 업무, 수당, 해촉 등의 규정 신설

- 다음으로, 개정안은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건강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서울건강총괄관’을 위촉하여 서울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장 보칙 <신설>	제5장 <u>서울건강총괄관의 운영</u> 제28조(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① 시장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민의 건강을 연계한 정책 수립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서울건강총괄관”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석사, 박사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신 설>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분
야에서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
다)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그 밖에 건강 및 보건·의료
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제29조(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등)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 전반에 걸친 시민 건강
관련 정책 발굴 및 개선에 관
한 자문

2. 시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
리 및 증진에 관한 정책 자문

3. 취약계층 지원 등 건강복지
정책에 관한 자문

4.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전략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서울건강총괄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서울건강총괄관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서울건강총괄관은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서울건강총괄관은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31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건강총괄관에게 수당 및 여비

<신 설>

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
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건강
총괄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
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
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
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
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
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

<u><신 설></u> <u>제28조</u> (생 략) <u>제28조의2</u> (생 략) <u>제29조</u> ~ <u>제33조</u> (생 략)	<u>유예 해당하는 경우</u> <u>제6장 보칙</u> <u>제33조</u> (현행 제28조와 같음) <u>제33조의2</u> (현행 제28조의2와 같음) <u>제34조</u> ~ <u>제38조</u> (현행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	---

1) 서울건강총괄관 ‘위촉·운영’ 필요성

-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도시를 말함.
- 우리나라는 그동안 건강도시 관련 법률조항이 별도로 없었으나, 2021년 12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가 신설되면서 국가 차원의 건강도시 정책 지원이 명문화됨.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하는데,
- 개발된, 건강도시 지표에는 아래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실현(HiAP)”을 고려해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현하도록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건강도시 지표>

영역	지표		세부 지표	
1. 인프라 구축	1-1	건강도시 추진 기반	1-1-1	조례
			1-1-2	비전
			1-1-3	부서 간 가치 공유
	1-2	건강도시 예산	1-2-1	예산 형태
	1-3	건강도시 조직과 인력	1-3-1	조직
			1-3-2	인력
	1-4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	1-4-1	기간에 따른 계획 수립
			1-4-2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2. 부문 간 협력	2-1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실현 (Health in All Policies, HiAP)	2-1-1	운영 협력 및 지원체계
			2-1-2	부문 간 협력활동
			2-1-3	건강영향평가
	2-2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2-2-1	공공기관과의 협력
			2-2-2	민간기관과의 협력
	2-3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	2-3-1	건강도시 국내 네트워크 활동
			2-3-2	건강도시 해외 네트워크 활동
			2-3-3	기타 건강을 목적으로 한 도시 간 교류활동
3. 지역사회 참여	3-1	지역사회 참여	3-1-1	지역주민 참여
			3-1-2	전문가 참여
	3-2	건강도시 정보제공	3-2-1	건강도시 주민교육
			3-2-2	건강도시 홍보와 소통
			3-2-3	지역사회 건강 환경 정보제공

영역	지표		세부 지표
4. 사업기획 및 수행	4-1	건강도시 사업계획 수립	4-1-1 데이터 수집 및 활용
			4-1-2 근거기반 사업계획
			4-1-3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4-2	건강도시 환경 조성	4-2-1 물리적 환경 조성 사업
			4-2-2 생활터 중심의 건강도시 사업
			4-2-3 지역 특화 건강도시 사업
5. 도시건강 정보 체계	4-3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4-3-1 모니터링
			4-3-2 성과평가
	5-1	도시건강 프로파일 작성	5-1-1 도시 건강 프로파일링
	5-2	도시건강 프로파일 공개	5-2-1 지자체 내 공유
			5-2-2 의회 공유
			5-2-3 주민 공개
	5-3	도시건강 프로파일 업데이트 및 활용	5-3-1 도시건강 프로파일 업데이트 및 활용

자료: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4), HP2030 팩트시트 No.33.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HiAP)을 위한 건강도시 환경 조성.

- 이처럼 “모든 정책에서의 건강 실현(HiAP)”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건강 분야의 민간전문가인 ‘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 또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문가를 위촉·운영토록 하고 있음²⁾.

2)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의 자문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

연번	명칭	운영근거	주요업무
1	서울총괄건축가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도시·건축 정책과 공간환경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
2	서울브랜드총괄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시 브랜드 구조 체계화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자문
3	서울공공디자이너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제도 운영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 자문 관련 지침마련 참여 공공디자이너 교육지원
4	서울규제총괄관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시 규제개혁 정책과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자문

2) 서울건강총괄관의 ‘자격요건’ 관련

- 다만, ‘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필요성과는 별개로, 먼저 개정안 제28조는 ‘서울건강총괄관’을 위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민간인 출신에게 적용되는 제1호 및 제2호는 다른 서울시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에 비하여 실무경력 기간이나 연구경력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인 ‘서울브랜드총괄관’ 자격요건과 비교>

서울브랜드총괄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6조)	서울건강총괄관 자격요건 (개정안 제28조)
민간경력 기준 3.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관련 분야 근무·연구 경력 8년 이상인 자	민간경력 기준 1. 민간(기업, 언론,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업무에 전문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석사,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 분야에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민간전문가는 법령·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범위 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의안번호 제2023-988호)도 아래와 같이 민간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상 불명확한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라고 주문함.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IV. 개선방안

1 위원 구성의 전문성·투명성 제고

□ 민간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 법령·조례·내부규정상 불명확한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구체화

- 분야별 자격취득 후 실무경력 기간 등을 적시하여 유능한 민간위원 위촉

< 민간위원 자격 요건(예시) >

분 야	불명확 (현재)	구체화 (개선)
교육인 (교수/학계)	▶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가	▶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 해당 분야의 전문가	▶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단체 추천	▶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u>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u>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관세·법률·재정 분야의 전문가 ▶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
현장 전문가	▶ 해당 분야의 전문가 ▶ 농업·농촌·농지 및 식품 <u>관련</u> 전문가	▶ 관련 전문가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현업 종사자	▶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 5년 이상 영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반영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내부규정에 반영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의결일 2023. 12. 18.).

3) 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사유’ 관련

- 다음으로 개정안 제32조는 ‘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이미 제6호에서 인용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각호 해촉 사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제6호에 다시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복하여 규정하는 방식보단 서울건강총괄관의 해촉사유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따른다고 규정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서울건강총괄관 해촉 사유 ‘중복’ 규정>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서울건강총괄관 해촉 사유 (개정안 제32조)
해촉 사유 1.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위촉 기간 내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촉 사유 1. 서울건강총괄관 스스로가 위촉 해지를 희망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서울건강총괄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위촉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밖에 ‘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안 제30조), 수당(안 제31조) 등의 개정사항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필요성이 있음³⁾

3 종합의견

-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는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라 밝혔으나, 개정안 제5조제3항의 주요내용은 두 계획 간 ‘연계’가 아닌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경우, ‘시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계획’으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임.
- 따라서 ‘제안이유’에 맞게 두 계획이 서로 연계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면 개정안 제5조제3항을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서울건강총괄관’의 위촉 필요성과는 별개로, 서울건강총괄관의 ‘자격요건’을 다른 서울시 민간전문가(서울브랜드총괄관)의 자격요건(실무경력 기간이나 연구경력 기준)과 비교하여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3)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의 자문료 기준) 민간전문가의 자문료는 일반자문과 특별자문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 건별로 지급하고, 자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자문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준용
2. 특별자문 일반자문의 150% 이내

- 그리고 ‘서울건강총괄관’의 ‘해축 사유’는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따른다고 규정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밖에 ‘서울건강총괄관’의 임기, 수당 등의 개정사항도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우현재	02-2180-8155